7/30 14시 이후 보도

공촌수계 수돗물 혁신 시민설명회

# 피해보상 방향

## ■ 기존 지원계획(안)

| 구 분 | 항목별 지원계획(안) |
|---|---|
| 상·하수도 요금 | ○ 수질피해발생 이후부터 종료시까지 전액 면제 |
| 의료비 | ○ 사실관계 확인(의사소견서 등) 후 진료비(약제비 포함) 실비 지원 |
| 수질 검사비 | ○ 공인인증기관 검사결과 확인 후 실비 지원 |
| 생수 구입비 | ○ 영수증 등 제출시 실비(시민평균 이용기준) 지원 |
| 필터 교체비 | ○ 사실관계 확인(영수증 등) 후 실비 지원 |
| 저수조 청소비 | ○ 실태조사(6.17(月)~21(金))를 거쳐 실비 지원 |
| 소상공인 지원 | ○ 피해지역 경영안정을 위한 융자특례보증 지원 |

※ 인천광역시장 기자회견 발표(`19.6.17.)

## ■ 보상 협의 추진 경과

| | | |
|---|---|---|
| 2019<br>7.02 | 1차 의료대책위원회 | • 위원장 선출<br>• 의료지원 기준 논의 |
| 7.10 | 1차 지원대책/보상협의회 | • 위원회 구성<br>• 협의회 운영방안 마련 |
| 7.16 | 2차 지원대책/보상협의회 | • (시) 보상원칙 제시<br>• (소상공인) 보상의견 제시 |
| 7.17 | 2차 의료대책위원회 | • 피해관련 의료지원 기준(안) 마련<br>- (기간) `19.5.30.~정상화 이후 1주일<br>- (범위) 본인부담 진료비 실비 지원 |
| 7.18 | 서구 민관대책위원회 | • 서구지역 보상협의 업무이관<br>(보상협의회 → 서구민관대책위원회) |
| 7.23 | 서구 민관대책위원회<br>보상협의회 (소상공인분과) | • (시) 일반주민 보상방향 설명<br>• 기존에 제기(7.16)한 보상방향논의 |
| 7.26 | 서구 민관대책위원회 | • 보상방향 논의 |

■ 보상기간 | ‘19.5.30 ~ 종료일

■ 보상방향

◆ 공표된 항목에 대해 개별신청에 의한 실비보상

- 개별 신청시 영수증 등 증빙서류 첨부 필요
- 사회통념을 벗어난 과다한 신청 금액은 (가칭)피해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산정

◆ 피해주민 위로 등의 목적으로 상·하수도 요금 1개월 추가 면제

- 다만, 개별신청에 의해 보상 받은 세대는 보상금액 재산정 시 고려

◆ 소상공인, 어린이집, 교육시설(유치원,학교)는 별도 보상기준에 따라 보상

## ■ 피해보상 기준(안)

| 명 칭 | 적 수 시작일 | 종료일 | 신청 여부 | 대 상 | 보 상 기 준 (안)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**상·하수도 요금** | 5. 30일 | D일 | **X** | 공촌수계 수용가 | ○ **상·하수도요금 (2+1)면제**<br>- 적수 종료 **이전 2개월** 상·하수도요금 면제<br>- 적수 종료 **이후 1개월** 상·하수도요금 **추가** 면제 |
| **의료비** | | D일 + 1주일 | O | 공촌수계 內 시민 | ○ 피부, 위장질환 등 사실관계 확인(**의사소견서 등**) 후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 |
| **수질 검사비** | | D일 | O | 공촌수계 內 시민 | ○ 공인인증기관(먹는물 수질검사기관) **검사결과 확인** 후 실비 지원 |
| **생수 구입비** | | D일 | O | 공촌수계 內 시민 | <기준><br>○ 생수는 영수증 등 제출시 실비(**시민평균 이용기준**) 지원<br>○ 필터는 **사실관계 확인(영수증 등)** 후 실비 지원<br>- 사회통념을 벗어난 과다한 신청 금액은 (가칭)피해보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금액 재산정(예정)<br>- 추가 면제된 상·하수도요금은 보상금액 재산정 시 고려 |
| **필터 교체비** | | D일 | O | | |

* **저수조 청소비용 : 인천광역시(상수도사업본부)에서 일괄처리 예정**

## ■ 보상 절차

| | |
|---|---|
| 주민설명회 | ▪ 피해보상방향(안) 의견수렴 |
| 보상계획 공고 | ▪ 인천시청, 서구청, 중구청, 강화군청 홈페이지<br>▪ 언론, 공보(인천시보)게재, 중앙·지방지 안내문 게재 등 |
| 보상접수 및 심사 | ▪ 접수 : 온라인, 우편, 현장접수 등(약 2~3주)<br>▪ 심사 : (가칭)피해보상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|
| 보상금 청구 및 지급 | ▪ 심사결정 및 통보 (위원회 → 개인)<br>▪ 보상금 청구(신청인) 및 지급(계좌입금) |
| 이의신청 및 재심 | ▪ (가칭)피해보상심의위원회 |